

「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,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, 명칭 및 위치, 시설,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- 휴관일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사용신청, 사용료 및 수강료, 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,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10조, 안 별표, 별지 서식)
-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
「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구미생활문화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